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는 시기를 자동차제작자별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중 “지난 다음 연도”를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로 개정
- 나. 같은 조 제3항 중 “해 9월 30일까지”를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으로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17. ~ 5.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 중 “지난 다음 연도”를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 9월 30일까지”를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 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u>지난 다음 연도에</u>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 ----- ----- ----- ----- ----- ----- <u>끝나는 날부터 2년 이</u> <u>내</u>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통지받은 <u>해 9월 30일까지</u>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 ----- ----- <u>날부터 60일 이내</u> <u>에 해당</u>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연 락 처	(044) 203 - 5149